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1. . . (제 회)	

구직자 취업촉진 및
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안경덕 (고용노동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1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구직촉진수당 등의 효율적인 지급을 위해 수취인 계좌로의 입금에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2)

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5조의2(지급금등의 입금 방법 등)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구직촉진수당등, 민간기관의 위탁수수료 등(이하 “지급금등”이라 한다)의 효율적인 지급을 위하여 「은행법」에 따른 은행 또는 채신관서(이하 “금융기관”이라 한다)로 하여금 입금하도록 할 수 있다.

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급금등을 입금하기로 정한 금융기관에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그 예금계좌로 입금에 필요한 자금을 이체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급금등의 입금 등을 위한 처리 절차 및 방법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.

제16조제1항제6호 중 “업무”를 “업무와 제15조의2에 따른 입금업무”로 한다.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15조의2(지급금등의 입금 방법 등)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구직 촉진수당등, 민간기관의 위탁수수료 등(이하 “지급금등”이라 한다)의 효율적인 지급을 위하여 「은행법」에 따른 은행 또는 체신관서(이하 “금융기관”이라 한다)로 하여금 입금하도록 할 수 있다.</u> <u>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급금등을 입금하기로 정한 금융기관에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그 예금계좌로 입금에 필요한 자금을 이체하여야 한다.</u> <u>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급금등의 입금 등을 위한 처리 절차 및 방법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.</u>
제16조(권한 등의 위임·위탁)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직업안정기관의 장(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)에게 위임한	제16조(권한 등의 위임·위탁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
다. 1. ~ 5. (생략) 6. 제14조제1호부터 제18호까지 에서 규정한 사무(제2항에 따 라 민간기관에 위탁된 <u>업무</u>는 제외한다) ② ~ ⑥ (생략)	--. 1. ~ 5. (현행과 같음) 6. ----- ----- ----- <u>업무와</u> <u>제15조의2에 따른 입금업무</u>-- -- ② ~ ⑥ (현행과 같음)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-	---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기획팀	
연 락 처	(044) 202 - 7191